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재진 의원 외 44명
- 나. 의안번호: 제1029호
- 다. 발의일자: 2023. 8. 14.
- 라. 회부일자: 2023. 8. 21.

### 2. 제 안 사 유

-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음.
- 산재 신청자들은 그 원인을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가 폐질환, 60여 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 나. 시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다.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조).
- 마.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특히 조리실 근무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 용
제명	· 상위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
안 제4조	· 시민의 책무 신설
안 제5조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안 제6조	· 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안 제9조	·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위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 나.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2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오염물질 및 환기설비 등을 정의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면서 다음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안 제6조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9조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1)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의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리매연(조리흡)의 위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안이라 판단됨.

다만, 지원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로 설정(산업체 제외)한 것은 한정된 재원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9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서울시 집단급식소 설치 현황>**

(개소, 23년 8월 기준, 서울시 식품정책과)

계	다중이용시설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수련원	기숙사
	소계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공공기관	기타 집단급식소	노인요양시설						
6,051	2,958	1,927	3	521	299	140	68	800	324	1,389	539	12	29

1)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